

일본, 유기농업추진 기본방침 결정

정은미*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년 12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 추진법)’을 제정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27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기본방침은 크게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유기농업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기본방침의 개요

유기농업은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활동에서 유래하는 환경부하를 대폭 줄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식료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농산물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5년 3월)에서도 농업생산 전체의 방향을 환경보전 중시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기농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이를 위해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또한 소비자가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유기농업은 자연이 본디 갖고 있던 생태계 기능을 활용하여 작물에 건전한 생육환경 형성이나 병해충 발생 억제를 실현하는데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보통 농업에 비해 병해충에 의한 품질·수량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대부분은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안심’,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선택하며,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생산에서 유래하는 환경부하를 대폭 줄이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해서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이해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농업인과 관계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얻어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립과 발전을 목표로하기 위해 2006년 12월 ‘유기농업추진법’이 시행되었다.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은 유기농업추진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으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며 도도부현에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의 기본이다.

앞으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는 투명성, 공평성 확보에 유의하면서 농업인과 관계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얻어 유기농업을 추진한다. 이 기본방침은 2007년부터 약 5년간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

2.1.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용이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추진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은 현실에서 병해충 발생과 함께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간이나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용이하게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강화해야 하며 유기농업의 방법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2.2. 농업인, 관계자가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추진

유기농업 추진은 아직 미약하지만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유기농업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여 판로 개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추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며 유기농업에 나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와 농산물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와 연계·협력하여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판매 또는 이용 확대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2.3. 소비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추진

안전 또는 양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을 확대하고 해당 농산물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유기농업인,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소비자 간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한 정보가 수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JAS(일본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적정한 표시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유기농업인, 관계자와 소비자의 연계 추진

유기농업 추진에는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거리 교육(食育), 지산지소(地產地消), 농업체험학습, 도시농촌교류의 형태를 통해 소비자와 유기농업인, 관계자의 교류·연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5. 농업인, 관계자의 자주성 존중

유기농업 추진에는 유기농업이 지금까지 오로지 유기농업을 지향한 일부 농업인과 관계자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 및 앞으로 유기농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도 아직 적은 상황에서 유기농업 추진에는 지역실정, 농업인과

관계자의 의향에 대한 배려 없이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가 확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 목표에 관한 사항

3.1. 목표 설정의 기본구상

농업인이 용이하게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과 관계자가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유기농업추진 법이 정한 기본이념이다. 따라서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을 국가, 지자체, 농업인과 관계자, 소비자의 공통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현실에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 확립과 함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가 중요한 과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 정비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한다.

3.2.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 목표

(1)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개발·체계화

유기농업에 농업인이 용이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병해충으로 품질이나 수량 저하가 일어나기 쉽다는 과제를 가진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한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국가 시험연구기관, 도도부현, 대학, 유기농업인, 민간단체에서 개발되고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적인 품질·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기농업 기술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2) 유기농업에 관한 보급 지도 강화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는 국가나 도도부현의 연수를 활용하며 선진적인 유기농업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의욕적인 농업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센터나 시험연구기관에 보급지도원을 배치하는 등 보급지도원에 의한 유기농업 지도체제를 정비한 도도부현의 비율을 10%로 한다.

(3)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증진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 조사를 통해 파악하며 유기농업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이라는 것을 아는 소비자의 비율을 2011년까지는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도도부현에서 추진계획 책정과 유기농업 추진체계 강화

현실적으로 아직 소수인 유기농업을 추진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여러 농업인과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며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기농업추진법 제7조 제1항에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정하는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책정·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의 비율을 2011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한다. 나아가 전국 각지에서 기본방침, 추진계획에 따라 방안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유기농업인이나 유기농업 추진에 나선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소비자, 행정당국, 농업단체로 구성

되어 유기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가 정비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비율을 2011년까지 도도부현에서는 100%, 시정촌에서는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유기농업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4.1. 유기농업인의 지원

(1) 유기농업 방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유기농업에 필요한 기술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 생산·유통시설의 공동이용 기계·시설정비 지원에 노력하며 ‘지속성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10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성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에 관한 계획(이하 도입계획) 책정을 유기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도입계획 책정 및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 특례조치를 동반한 농업개량자금 대부에 의한 지원에 노력한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되는 ‘농지·물·환경보전 향상 대책’을 활용하고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환경부하를 대폭 낮춘 지역의 체계를 갖춘 조직에 대해서 해당 방식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도 배분 가능한 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유기농업 지원에 노력한다.

나아가 유기농업으로 지역농업 진흥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가는 모델이 될 유기농업을 핵으로 한 지역진흥계획을 책정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진흥계획 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기농업인, 지자체, 농업단체, 유기농업 추진에 나선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지역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실증 및 습득을 지원한다.

(2) 새롭게 유기농업을 시작하려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관계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유기농업에 신규 영농희망자가 원활히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및 도도부현에서 취농상담, 도도부현 농업대학교나 취농준비학교, 유기농업 추진에 나선 민간단체에서 연수교육 추진, 취농지원자금 교부에 의한 지원 등에 노력한다.

또한 유기농업 신규 영농희망자에 대해 적절한 지도나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인이나 유기농업 추진에 나선 민간단체와 연계·협력하여 국가, 지자체, 농업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유기농업의 의의나 실태, 유기농업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에 관한 지식,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 실시에 노력한다.

(3)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판매 지원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특색을 살린 판매나 소비자·실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농업인에게 JAS법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이나 ‘생산정보공표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의 활용, 농산물의 생산·출하정보를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및 소비자에게 널리 제공할 네트 카터로그를 이용한 정보 수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직판 시설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활동에 나서는 유기농업인에 대해 소비자나 실수요자와의 정보 수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농산물 직판시설의 정비 지원에 노력하며 상당한 물량의 유기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유통업자, 판매업자, 식품제조업자나 외식업자의 실수요자와 유기농업인, 농업단체와의 의견교환이나 상담의 장 설정, 도매시장 유통에서 제3자 판매나 직거래 장치 적용을

통해 유기농업인이나 농업단체와 유통업자, 판매업자나 실수요자와의 중개역 할에 노력한다.

4.2. 기술개발 촉진

(1)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촉진

국가나 지자체는 협력하여 유기농업인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에서 개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며 이 기술을 적절히 조합시켜 품질이나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도입효과, 적용조건을 파악하는 실증시험에 노력한다.

또한 국가는 유기농업 실태를 살펴보고 이미 수행되고 있는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과학적인 해명이나 이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등 유기농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설정하며 연구개발 실시에는 국가 시험연구기관을 비롯한 도도부현, 대학, 민간 시험연구기관 행정당국, 유기농업인이 참가하여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이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는 입지조건에 적응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연구 개발, 타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역 농업생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실증시험에 노력한다.

(2)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촉진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에 관해 유용한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며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시정촌, 농업단체의 지역 관계기관이나 유기농업인, 민간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연구개발 성과 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유기농업인이나 앞으로 유기농업을 시도하려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연

구개발 성과, 지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지도 및 조언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인의 협력을 얻어 보급지도원에게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 내용, 충실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기농업인의 기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4.3.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 증진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기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 활용이나 심포지움 개최로 정보의 수발신, 자료 제공, 모범적인 유기농업인의 소개 등을 통해 소비자를 비롯하여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학교관계자 등에게 자연 순환기능을 증진하며 환경에 부하를 낮추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유기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지식 보급계몽과 더불어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노력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소비자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우수 사례 소개와 정보를 발신하며 소비자에 대해 JAS법에 기초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 규칙·검사인증제도의 보급 활동에 노력한다.

4.4. 유기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이해 증진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먹을거리 교육(食育)이나 지산지소(地產地消), 농업체험학습, 도시농촌 교류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소비자와 학생, 도시주민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한다.

또한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유기농업인과 소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우수 사례 소개와 정보 발신에 노력한다.

4.5. 조사 실시

국가는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동향의 기초적인 정보,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동향,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유기농업에 관한 추진사례, 기타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단체, 유기농업을 추진에 나선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4.6. 국가 및 지자체 이외의 유기농업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국가나 지자체는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활동에 자주적으로 나서는 민간단체에 대해 정보제공, 지도 및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들과 연계·협력하여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체제정비에 노력한다. 또한 이들 민간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 소개 및 정보 발신에 노력한다.

4.7.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 기본방침, 해당 도도부현에서 유기농업 실태에 맞게 정한 유기농업 추진방침, 해당방침을 근거로 약 5년간 실시할 시책, 유기농업을 추진하는데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유기농업인의 의견 반영, 추진상황 파악 및 평가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 책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책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도 및 조언에 노력한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며, 지자체 직원이 유기농업의 의식이나 실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체계, 선진적인 사례 등 유기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5.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5.1.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체제 정비

(1) 국가 및 지자체의 조직 내 연계체제 정비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은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각 측면에서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시책을 계획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연계를 확보할 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2) 유기농업 추진체제 정비

유기농업 추진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며 유기농업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주적으로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전국, 지방 단위의 각 단계에서 유기농업인이나 유기농업 추진에 자주적으로 나선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소비자, 행정 당국 및 농업단체로 구성된 유기농업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이들과 연계·협력하여 유기농업을 추진해 가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체제를 정비하도록 한다.

(3)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추진체제 정비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에는 국가 시험연구기관,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과 함께 유기농업인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도 자주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들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함으로써 기술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국가는 전국, 지방 단위의 각 단계에서 시험연구기관 외에 행정·보급담당 부서, 유기농업인, 농업단체 등이 참가하여 연구개발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의견교환, 공동연구의 장을 설정하며 관계된 연구개발 추진상황을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5.2. 유기농업인의 의견 반영

국가와 지자체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 책정에서 의견공모 절차 실시, 현지조사, 유기농업인과의 의견교환, 기타 방법으로 유기농업인과 관계자 및 소비자의 해당 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해당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국가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추진상황에 따라 시책을 검토하는 체계를 정비하며 지자체에서도 같은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5.3. 기본방침 재점검

이 기본방침은 유기농업추진법에 나타난 기본이념 및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따라 기본방침 책정시점에서 여러 정세에 대응하여 책정된 것이다. 앞으로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농업을 둘러싼 정세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 달성상황이나 시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도 기본방침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약 5년간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적절히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일본농림수산성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基本的な方針の公表について” 발췌정리